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9 선고 2019가단1007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길연

변론 종결2019. 12. 12.

판결 선고2020. 1. 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,219,775원 및 그중 22,161,869원에 대하여 2019. 2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은빈

별지